

## **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(支援) 운영규정**

### **제 1조 (명칭)**

본 규정은 “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”이라고 한다.

### **제 2조 (목적)**

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의 선발과 지원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**제 3조 (지원대상 학회)**

해외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한다.

### **제 4조 (지원자의 자격)**

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 중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대상 학회에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(연제 당 발표자와 공동저자 1인 지원 가능)
2. 대상 학회의 심포지움/특강의 좌장/연자/지정 토론자

### **제 5조 (지원 신청)**

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(학회양식참조) 2. 초록 사본(지원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, 발표자는 밑줄을 추가) 3. 초록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메일 등) 4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(초청장 등)

### **제 6조 (참가지원 대상자 선정)**

#### **제 1항 (선정위원회 구성)**

선정위원회는 이사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
#### **제 2항 (선정기준)**

1.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의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

근거한점수표를 기준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가. 초록 1편당 1인을 우선 지원

나. 최근 3년간 춘계 연수강좌 및 추계 소화기연관학회 합동학술대회 참석 및 연제 발표 건수

- 최근 3년간 상기 학회 참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

다. 최근 3년간 대한소화기학회지 및 "Gut and Liver" 논문 게재 건수

라. 낮은 직급(전공의/전임의, 조교수, 부교수, 교수 순서로 우선 지원)

마. 최근 1년간 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회 참가 지원 수혜 여부

- 선정 후 비참석자는 참석으로 간주

바. 대한소화기학회 및 연관학회 임원 및 위원

사. 구연 발표자

아. 심포지움/특강 연자 및 좌장 (대상 학회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)

자.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

차. 평가점수 합산에서 동점인 경우 졸업년도, 직급 순으로 하위자 우선

2.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
## 제 7조 (지원 범위)

제 1항: 상한액 내에서 등록비, 항공료, 숙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, 나머지 교통비, 식비 등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 2항: 지역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며, 구체적인 상한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 8조 (수혜자 의무)

제 1항 (품위 유지)

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## 제 2항 (정산 서류)

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5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.

1. 해외 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(학회양식참조)
2.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
3. 학회등록비, 숙박비, 교통비 및 식사비 등의 영수증 원본

## 제 3항 (수수료)

학회는 지원금에서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. 제 9조 (지원 예산)

## 제 9조 (지원 예산)

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. 단, Asian Pacific Digestive Week의 Council Member의 경우 학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.

## 제 10조 (부칙)

제 1항: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 2항: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